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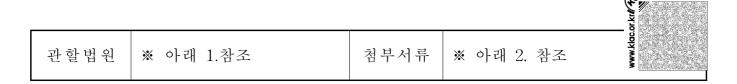
금전 공탁서(가압류해방)

공 탁 번 호	년 금 제	호	년	<u>월</u>	일 신청	법령조항	민사집행	법 제282조
공 탁 자 (가압류 채무자)	성 명 (상호, 명칭)	000						
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111111-1111111						
	주 소 (본점, 주사무소)	ㅇㅇ시ㅇㅇ구ㅇㅇ길ㅇㅇ						
	전화번호	00-000				0000		
공 탁 금 액	한글 금삼천오백만원정			보 관 은 행			ᅌᆌ	행 지점
	숫자 35,000,000)0,000원			上世亡 9		은행	시심
법원의 명칭과 사 건	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○호 부동산가압류사건							
	당 사 자	채 권 자				채 무 지	}	000
공탁원인사실	위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							
비고(첨부서류 등)	1. 가압류 결정문 사본 2. □ 계좌납입신청							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								
공탁자 성명 ○ ○ ○ (서명)					성명			서명)
위 공탁을 수리합니다.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								
		k.	1	월	일			
법원				지	원 공탁관	<u> </u>	((인)
(영수증)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.								
		Ę	<u> 1</u>	월	일			
공탁금 보관은행(공탁관) (인)							(인)	

- ※ 1.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,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, 주소(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)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.
 - 2.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'고유번호'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3.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.
- 4.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



1. 가압류해방공탁 관할

-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여야 할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.
- 통상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.

2. 가압류해방공탁 제출서류 등

- 공탁서 2통【공탁소】
- 가압류결정문사본(공탁근거서류로 첨부하여야함)
- 자격증명서 등(※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)
 - ① 법인의 대표자(대표이사 등) 및 등기된 지배인이 신청하는 경우:법인등기부등·초본
 - ② 법인 아닌 사단·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:정관(규약) 및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(대표자선임결의서)(※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종중등록증명 서는 대표자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음)
 - ③ 법정대리인(미성년자의 친권자 등)이 신청하는 경우: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선임심판서 등
 - ④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 - ▷ 개인(변호사, 법무사 포함)인 경우 위임장(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)
 - ▷ 법인의 피용자(직원)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위임장(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)

■ 첨부서면의 생략

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탁서에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원용한다고 기재

-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·공무원신분증)《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신분증》
- 도장《대리인에 의한 공탁은 대리인의 도장》